

	통합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SHI-814
		개정일자	2023.08.01
	유해화학물질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1
		쪽 번호	1 / 6

□ 목 차 □				
1. 적용범위 2. 목 적 3. 관련 법규 4. 용어의 정의 5. 책임과 권한 6. 업무 절차 7. 기록 관리 8. 관련 문서				
1	2023.08.01	ISO14001 통합에 따른 개정		
0	2022.08.01	ISO45001 인증 추진 따른 안전보건체제 구축을 위한 제정		
개정번호	개정일자	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		
구 분	작 성 자	검 토 자		승 인 자
부서명 / 직책	안전환경관리부 주 임	안전환경관리부 부 장		대 표 이 사
성 명	공 도 현	김 병 후		이 수 대
서 명				
일자(년/월/일)	2023/08/01	2023/08/01		2023/08/01

	통합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SHI-814
		개정일자	2023.08.01
	유해화학물질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1
		쪽 번호	2 / 6

1. 적용 범위

이 지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취급 등의 관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.

2. 목적

이 지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히 관리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3. 관련 법규

- 3.1. 화학물질 관리법
- 3.2.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
- 3.3.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
- 3.4.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
- 3.5.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시행령
- 3.6.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시행규칙
- 3.7. 위험물안전관리법
- 3.8.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
- 3.9.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
- 3.10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- 3.11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3.12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- 3.13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3.14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3.15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4. 용어의 정의

- 4.1. 위험물질
 - 1) 화학물질관리법에 화학물질, 유해화학물질, 유독물질, 취급 제한 유독물, 관찰물질
 - 2) 위험물안전관리법, 소방법에 따른 위험물
 - 3)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및 혼합물
- 4.2. 화학물질
 - 1)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·정제한 것

	통합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SHI-814
		개정일자	2023.08.01
	유해화학물질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1
		쪽 번호	3 / 6

4.3. 유독물

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.

4.4. 관찰물질

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칠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

4.5. 위험물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

4.6. 혼합물

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

4.7. 유해화학물질

유독물, 관찰물질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말한다.

4.8. 물질안전보건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)

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적, 물질적, 관련 정보 및 위험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 주는 체계적인 정보

5. 책임과 권한

5.1. 현장소장

- 1) 위험물 발생 여부 파악 및 대책 방안 등 승인

5.2. 총무(총무 업무 담당자)

- 1) 유해화학물질 및 유독물을 적법하게 보관, 사용, 취급 및 사용 후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.
- 2) 현장 위험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인허가 업무

5.3. 안전관리자

- 1)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주요성분 및 유독성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목록을 종합 관리한다.
- 2) 유독물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사용자에게 대하여 사용 방법, 인체접촉, 유출사고발생시 대처 방법 등에 교육을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.
- 3) 유해화학물질 및 유독물을 적법하게 보관, 사용, 취급 및 사용 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- 4) 유해화학물질과 유독물, 기타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한 MSDS를 입수하여 게시한다.

5.4. 유독물 사용자

- 5.5. 유독물 사용 시 비치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	통합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SHI-814
		개정일자	2023.08.01
	유해화학물질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1
		쪽 번호	4 / 6

- 5.6. 사용자는 유독물 사용 전에 시설의 외관 상태, 기능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점검하고 이상 상태가 발견되면 이를 즉시 유독물관리자 및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조치에 따른다.
- 5.7.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도 상기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시 점검하고 점검내용을 다음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6. 업무절차

6.1. 일반사항

- 1) 현장소장은 현장에 적용해야 할 환경관리 대상과 범위를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식별해야 한다.
 - (1) 해당되는 공사인 경우 적격심사 시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의 각 환경측면 개선계획
 - (2) 현장 실착공 후 시행된 **환경운영관리규정**에 의한 **환경측면영향평가** 결과
 - (3) **법규준수 및 준수의무 규정**에 따른 첨부된 환경 법규등록 대장
- 2) 현장소장은 식별된 환경관리 대상측면에 대해 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.
 - (1) 현장 환경관리계획을 “**품질경영·안전보건경영·환경경영 매뉴얼**”의 “**운영관리 규정**”에 의해 작성되는 **환경관리계획서**에 포함
 - (2)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**목표관리 규정**에 따른 환경 목표 추진계획 수립
- 3) 안전관리자는 화학물질의 성분 및 특성에 관한 자료를 납품업체 등에 요청하여 유독성 판단자료(MSDS)를 입수한다.
- 4) 안전관리자는 MSDS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성분 및 유독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사용 여부를 게시한다.

6.2. 위험물 발생 여부

- 1) 현장소장은 현장시공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위험물 배출량을 예측하여 대책방안을 수립 검토해야 한다.
- 2) 안전관리자는 발생 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수량 이상으로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.
- 3) 현장소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60일(공사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끝나는 날) 이내의 기간 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인,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4)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소 또는 취급장소의 위치, 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은 시, 도의 조례 또는 환경부령에 따른다.

6.3. 유해화학물질 시설 및 사용에 대한 점검

-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 시 점검항목 또는 세부 점검항목 등을 추가 변경할 수 있다.
- 1) 유독물 표지판 및 표준작업 수칙판 부착상태
 - 2) 보호 장비 비치 여부

	통합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SHI-814
		개정일자	2023.08.01
	유해화학물질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1
		쪽 번호	5 / 6

- 3) 밸브 및 배관 부위의 누출 여부
- 4) 환기 및 뚜껑을 개폐 여부
- 5) 정리 정돈 및 기타 안전, 환경, 위험 요소
- 6) 유출시 응급조치 및 주의사항 부착 여부
- 7)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표시 여부

6.4. 유독물질의 안전관리

- 1) 유독물 사용부서는 유독물 취급에 필요한 보호 장비(장갑, 보호의, 장화, 방독마스크 등)를 비치해야 한다.
- 2) 유독물을 사용하는 작업자는 유독물 취급 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.
- 3) 유독물 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.
- 4) 유출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벽을 설치한다.
- 5) 외부인 통제 및 고의적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망, 잠금장치 등 적절한 방법을 취한다.
- 6) 유독물 사용, 보관시설 주변에 화기 취급을 금한다.
- 7) 유독물 사용부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, 비치하여야 한다.

6.5. 화학류 관리

- 1) 현장소장은 시공 시 설계도서를 검토해 화학류 사용량을 예측하여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2) 현장소장은 화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화학 반장으로 선임하고, 화학 반장은 관할 경찰서에 화학류 사용(소지) 허가 신청한다.
- 3) 현장 화학 반장은 화학류 사용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화학류 양도, 양수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.
- 4) 화학류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화학류 저장소 설치(변경) 허가 신청서를 지방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5) 화학 반장은 매일 그날의 최소 사용량을 예측하여 관할 경찰서 화학 창고에서 화학을 수불한 후 당일 수불량을 모두 소진하되 잔량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 화학 창고에 반납한다.

6.6. 폐기물 보관 및 처리

- 1) 사용부서는 사용 후 폐기물로 방생된 유해화학물질을 별도의 용기 및 장소에 보관하고 **폐기물관리지침서**에 따라 위탁 처리한다.

6.7. 환경점검

- 1) 현장소장은 현장의 환경관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정상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현장 총무를 선정하여 환경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2) 현장 총무는 **매일 1회 순회점검**을 환경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잘 시행되고 있는 경우 별도 기록은 작성하지 않고 부적합사항 발견시 **지속적개선 규정**에 따라 처리하고 기록한다.
- 3) 발견된 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 **지속적개선 규정**에 따라 부적합을 처리하고 관련 조치

	통합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SHI-814
		개정일자	2023.08.01
	유해화학물질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1
		쪽 번호	6 / 6

란에 부적합보고서 번호를 기록한다.

- 4) 우기 혹은 특별한 작업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 점검을 상기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점검결과란 중 빈칸에 기록한다.

7. 기록관리

- 7.1. 본 규정과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사항은 **문서화된 정보관리 규정(HW-QESHP-751)**에 따른다.

기록문서	관리부서	양식번호	보존기한
환경 점검표	안전환경관리부	HW-환경-003	3년

8. 관련문서

- 8.1. 목표관리 규정
- 8.2. 환경운영관리 규정
- 8.3. 법규관리 및 준수의무 규정
- 8.4. 환경영향평가 규정
- 8.5. 지속적개선 규정
- 8.6. 폐기물관리지침서
- 8.7. 품질매뉴얼
- 8.8. 안전보건, 환경 매뉴얼